

제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5769 판결 [보증금지급 청구]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나79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5769 판결

전문

원고제주특별자치도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2015. 4. 23.

판결선고2015.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5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태흥조경개발(이하 '태흥조경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183,228,000원 중 태흥조경개발 부분 692,301,599원, 공사기간 2012. 5.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태흥조경개발은 2012. 6. 8. 선급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보증금액 500,050,460원, 보증기간 2012. 6. 8.부터 2013. 5. 28.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태흥조경개발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고 2012. 6. 11. 태흥조경개발에 위 공사대금 692,301,599원 중 선급금 명목으로 48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위 도급계약은 2013. 3. 29. 그 공사 기간을 2013. 8.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와 태흥조경개발은 2013. 3. 27.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의 내용 중 보증기간을 2013. 5. 29.부터 2013. 10. 19.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보증채권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반환사유가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주채무자의 당좌거래 정지	당좌거래 정지일자 기준
2. 주채무자의 공사포기	공사포기 문서일자 기준 다만,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전 15일 이내의 경우에는

1. 주채무자의 당좌거래 정지	당좌거래 정지일자 기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함
3.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해제 또는 해지문서 일자기준
4. 기타 주계약에 의한 반환사유의 발생	반환요청 문서의 일자 기준

제7조(협조 및 통보사항)

② 주계약의 이행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2. 채무자나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원고는 2013. 7. 23. 태흥조경개발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급금 보증금 500,050,46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금 500,050,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태흥조경개발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는 등으로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인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아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의 각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그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증계약의 대상인 도급공사의 내용과 공사금액·공사기간 및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것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등이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금액을 추가함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보증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위와 같은 요소 외에 실제 도급공사의 진행 여부와 진행의 정도, 실제 선급금의 지급 여부와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이후 기성금이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되어 공사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까지도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의 약관 제7조에서는 '주계약의 이행 중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바로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규정한 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의 내용 중 보증기간만을 연장하는 추가보증계약인 사실,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은 2013. 3. 27. 체결되었는데, 태흥조경개발의 채권자인 A이 2012. 11. 6. 태흥조경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4,800,000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A이 2013. 1.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12. 6. 태흥조경개발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0,129,380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흥조경개발은 피고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보증채무자인 태흥조경개발의 체불 등으로 인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사실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보증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태흥조경개발이 위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태흥조경개발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태흥조경개발과의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와 같은 취지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3. 8. 14.자 이 사건 2차 보증계약 취소통지서가 2013. 8. 18.경 태흥조경개발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제2차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의 약관 제7조에 관하여 설명·고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들어 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태흥조경개발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을 위 약관이 아닌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태흥조경개발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태흥조경개발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태흥조경개발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위 취소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증인을 기망하였고,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증인이 이미 보증서를 교부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계약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태흥조경개발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 당시 이미 자금난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당하였고, 원고 역시 위 채권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아 태흥조경개발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 당시 태흥조경개발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한 선급금보증서 뒷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의 약관 제7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태흥조경개발은 위 가압류결정 등이 송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경 부도를 내 결국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태흥조경개발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가압류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유석동

판사김경태

판사이영호